

붙임 1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요청 주체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주(주관처접수) <input type="checkbox"/> 지역주관처 발굴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 등록								
신청구분(택1)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가맹점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가맹점								
	* 온라인 가맹점이란?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 *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신청 시 신청서류 개별 작성								
기간 등록 여부 (선택사항)	<input type="checkbox"/> 기간 등록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지역축제가맹점의 경우 축제기간 한시등록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NH농협카드 가맹점번호	* 농협카드 콜센터(1644-7400) 또는 Van사, PG사를 통해 확인가능(NH 미가맹시 KB 가맹점번호) * 결제대행사 이용 시 결제대행사 명 기재								
분야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준'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용분류(선택사항)	<input type="checkbox"/> 전화결제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별도 신청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친화시설								
이용분류 상세내용 * 이용분류 선택 시 작성									
이용정보									
	* 이용자 사용편의를 위한 이용안내정보 작성(운영시간, 휴무일 등)								
문화누리카드 할인 내용(선택사항)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전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홈페이지 공개 및 전용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								
비허용 상품 관리방안 (복합사업자의 경우 작성)									
	* (예시) 매장 내에 문화누리카드 결제불가품목 안내 포스터 부착								
가맹점(매장) 주소									
URL(웹사이트 주소) * 온라인가맹점만 해당	https://								
가맹점 연락처									
가맹점주 성함	가맹점주 연락처								
가맹점주 이메일	문자수신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실무담당자 성함	실무담당자 연락처								
실무담당자 이메일	문자수신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가맹점 대상 주요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한 문자는 문자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r> <th>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th> <th>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th> <th>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r> <td>(가맹점주/실무담당자) 이름, 휴대폰, 이메일</td> <td>정보현행화 및 주요 공지사항 전달, 설문조사 및 홍보 등</td> <td>가맹점 해지 또는 철회요청 시</td> </tr> </table>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점주/실무담당자)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정보현행화 및 주요 공지사항 전달, 설문조사 및 홍보 등	가맹점 해지 또는 철회요청 시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점주/실무담당자)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정보현행화 및 주요 공지사항 전달, 설문조사 및 홍보 등	가맹점 해지 또는 철회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상기 가맹점은 실제 취급(운영)하는 상품(서비스)이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에 해당되므로 이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명	(인)	신청일자	2023 . .
-------	-----	------	----------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준

1.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PG사)	
관광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터카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매장 내에 식음료·생필품 등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한 상품을 일부 구비하고 있는 경우,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된 상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불가 안내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 없이 또는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라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가 발생한 가맹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지침>에 의거 조치되며, 사업 관리를 위해 예고 없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 경고/해지 기준 안내

- ① 허용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②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③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 ④ 숙박업소 중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받은 경우(성매매 등)
- ⑤ 담배 취급 또는 판매 사례가 적발된 경우
 - ⑤-1. 가맹점 내에 담배를 취급한 경우
 - ⑤-2. 가맹점에서 담배를 판매(문화누리카드 결제)한 경우
- ⑥ 의도적으로 주최기관의 공식 홍보물 또는 공식 쇼핑물을 사칭하거나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영업에 이용할 경우
- ⑦ 점검시점 기준,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⑧ 휴 · 폐점한 가맹점
- ⑨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⑩ 지역문화축제의 축제기간이 종료된 경우(연계 식음료가맹점 포함)
- ⑪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단, 지자체관리가맹점의 경우 해지 기준 중 ① ~ ③의 사유로 1회 적발 시 해지

※ 해지된 가맹점은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 가능. 단, 지자체관리가맹점의 경우 또는 재등록 가맹점이 가맹점 해지 기준 ① ~ ⑦의 사유로 재적발된 경우에는 해지 후 재등록 불가